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G-BEST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나. 변경시행일 : 2022년 1월 13일(목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
- 1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- 2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3) <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> 개정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	
	<신 설>	11.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,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 설>	바.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: 해당사항 없음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 설>	1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)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3) <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> 개정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“가. 투자대상”	※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	※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

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</p>	<p>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4호 내지 제7호, 제19조 제2호, 제3호, 제4호가목 및 나목,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4호 내지 제7호, 제19조 제2호, 제3호, 제4호가목 및 나목,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, “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”</p>	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[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]</u> <u>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기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</u> <u>1. 주의(Yellow) : 발생 Event에 대한 자본시장 영향 분석 → 운용전략의 조정 및 유동성관리 재검토</u> <u>2. 경계(Orange) : 위기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→ 유동성 점검 등 발생 현안 논의, 관리방안 마련 및 자산매각순서 등 검토</u> <u>3. 위기(Red) : 위기전담조직 운영 강화 → 펀드별 유동성 확보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, 환매 연기방안 마련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“라.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”</p>	<p>수익률변동성 : 20.8204% <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> (1)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(매우높은위험) ·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· <u>사전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%초과인 구조화된 상품(전략)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<u><신 설></u> 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(높은위험) · 고위험자산에 8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· <u>투기등급채권 등에 8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(다소높은위험) · 고위험자산에 80%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p>	<p><u>수익률변동성 : 20.8646%</u> <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> (1)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1등급(매우높은위험)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<u>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③ <u>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(높은위험) ① 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<u>레버리지(차입)을 일으키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</u>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(다소높은위험) ① 고위험자산에 8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 (주식형 및 주식파생형) · <u>사전계획된 수익구조상 손실가능비율이 원금의 20%이하인 구조화된 상품(전략)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· <u>투기등급채권 등에 80%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<p>4등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위험자산에 50%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· <u>투기등급채권 등에 50%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· 중위험자산에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<p>5등급(낮은위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<u>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</u> ·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· <u>사전계획된 수익구조가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(전략)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단,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- 이상으로 한정)</u> · 저위험자산에 60%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·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<p>6등급(매우낮은위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략> 2. 고위험자산이란 주식, 상품(Commodity), 리츠, 지분(유한회사, 합자회사, 조합 등), <u>부담보부대출 및 대출채권 등</u>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3. <u>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(BB+이하), 투기등급CP(B+이하), 자산유동화관련 채권(BBB+ 이하), 후순위채권, 주권관련사채권 등</u>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 (주식형 및 주식파생형) ③ <u>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u> ④ <u>레버리지(차입)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</u>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<p>4등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<u>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(예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귀책사유 이외의 협약 해지 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)</u>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<p>5등급(낮은위험)</p> <p><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<u>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단,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- 이상으로 한정)</u>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<p>6등급(매우낮은위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현행과 같음> 2. 고위험자산이란 주식, 상품(Commodity), 리츠, 지분(유한회사, 합자회사, 조합 등), <u>투기등급채권 등*, 무담보대출 및 대출채권, 파생상품</u>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<p>* <u>투기등급채권 등: 투기등급채권(BB+이하), 투기등급CP(B+이하), 자산유동화관련 채권(BBB+ 이하), 후순위 채권, 주권관련사채권, 신종자본증권, 조건부자본증권(contingent convertible</u></p>
--	--	--

	을 의미합니다. 4. 중위험자산이란 <u>채권(BBB-이상), CP(A3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,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</u> 을 의미합니다. 5. ~ 12. <생략>	<u>bond, CoCo bond)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</u> 3. 중위험자산이란 <u>채권(BBB-등급이상), CP(A3-등급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,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</u> ,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4. ~ 11. <현행과 같음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“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”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“나. 과세”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(5)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	<u>개정세법 반영</u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2. 연도별 설정 및 매매 현황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 기준)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“다.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” 및 “라. 운용자산 규모”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“라. 손해배상책임”	[손해배상의 주체] <생략>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자를 말한다) <생략>	[손해배상의 주체] <현행과 같음>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<u>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</u> 정하는 자를 말한다) <현행과 같음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[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및 발생 억제 를 위한 관리]	<u><삭제></u>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